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4.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7. 4.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이 영 희

가.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골자

(1) 동·하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센터의 개방시간을 06:00 ~ 22:00까지 통일하여 이용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 (안 제9조)

(2) 기준이 모호한 직능단체 행사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사용료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 장애인 할인규정을 보호자까지 확대 (안 제12조 제2항)

(3) 사용료 할인 규정이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쟁(민원) 방지 (안 제13조의3)

(4) 입장 제한 대상을 센터의 전시설로 확대하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근거 규정 삽입 (안 제15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민간시설과의 형평과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조정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복잡하고 애매한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 중 제1호나목 개별기준과 제2호나목 개별기준 사용료에서 개정된 주요내용>

<제1호 시설사용료 중 나목 개별기준사용료 주요 개정내용>

○(1)대공연장을 대공연장(서울퍼포밍아트홀)로 하고,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일반행사, 영화상영의 기본대관료는 150,000원으로 공연행사보다 50,000원 인상하였고, 음향장비, 조명장비 등 고가의 장비에 대하여는 개별사용료를 추가하도록 하였음.

○(2)소강당을 소공연장(아소홀)로 하고,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10,000원 인상하여 60,000원으로 하였고, 음향 및 조명 사용료는 5,000원 인상하여 20,000원으로 하였음.

○(3)다목적홀을 다목적홀(목련홀)로 하고,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20,000원 인상하여 50,000원으로 하였음.

○(4)종합체육관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20,000원을 인상하여 120,000원으로 하였음.

○(5)소체육관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현행과 같이 30,000원으로 하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음향장비 및 조명시설 사용료는 삭제하였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6)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단순화하고 통일하였으며, (7)주차료는 1일 주차상한액을 15,000원으로 규정하였고, 장애인, 국가요공자, 경차 등에 대한 할인(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중 나목 개별기준사용료 주요 개정내용>

○(1)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의 상한액 폭을 인상하여 조정하였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현행보다 간단하게 구분하였음.

○(2)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의 강습료 상한액은 10,000원에서 20,000원, 1일 이용입장료는 500원을 인상했으며, 헬스 사용료 상한액은 10,000원을 인상했음.

<검토의견>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복잡하고 애매한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9조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독서실을 제외한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것과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 제2호나목 개별기준에서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수영의 사용료구분이 현행규정에는 성인, 중·고생, 초등생, 유아로 세분화된 것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강습료 상한액도 인상한 것에 대하여는 사용료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현실적인 사항만 반영하였다는 일부의견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 · 관리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 하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센터의 개방시간을 06:00 ~ 22:00까지 통일하여 이용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 (안 제9조)

나. 기준이 모호한 직능단체 행사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사용료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 장애인 할인규정을 보호자까지 확대 (안 제12조제2항)

다. 사용료 할인 규정이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쟁(민원) 방지 (안 제13조의3)

라. 입장 제한 대상을 센터의 전시설로 확대하고,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근거 규정 삽입 (안 제15조)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민간시설과의 형평과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조정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2) 「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3) 2007 장애인복지시책(보건복지부 지침)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03.08. ~ 2007.03.28) 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의결(2007.03.27)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7.03.29)

라.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호중 "구의 행사"를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으로 한다.

제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6시에서 22시까지로 하되, 독서실의 경우는 06시에서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중 "구의 행사"를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행사"를 "행사 또는 교육"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를 "국가, 공공단체가"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제12조제3항중 "등록된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표 제2호가목에 규정한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를 "별표 제2호에 정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사용승인후 지체없이"를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로 하고, "행사종료 후 익일 17:00까지"를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할인) ①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할인한다.

1. 문화 3강좌 또는 체육 3종목이상 동시 등록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2. 1개월 단위 강좌 3개월분 동시등록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관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중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의해 배분한다.

제15조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각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2조제1항 관련)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2)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를 할증할 수 있다.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5)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6) "나"목 개별기준 중 (1) 내지 (6)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대공연장(서울퍼포밍아트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관료	공연	100,000원/1회	1. 공연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적용 2. 철야사용(23:00~익일06:00)은 기본 사용료의 20%를 할증(단, 준비 및 철수 작업 시 기본 사용료로 적용)
	행 사, 영화상영	150,000원/1회	
음향장비		40,000원/1회	- 기본장비 제공 - 추가장비 : 무선마이크 5,000원(1일/개) 핀마이크 10,000원(1일/개)
조명장비		50,000원/1회	- 기본조명 제공 - 핀조명 사용 : 대당 10,000원
영상장비		40,000원/1회	- 영사기
부대장비		20,000원/1회	- 피아노, 포그머신, 빔프로젝트,
		50,000원/1일	- 음향반사판, 댄스플로어(Tape별도)
냉난방비		30,000원/1시간	

비 고 : 연속하여 5일 또는 10회 이상 장기 사용시에는 전체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단, 준비나 연습 등을 위한 사용기간은 제외)

(2)소공연장(아소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60,000원/1회	
음향 및 조명	20,000원/1회	
피 아 노	10,000원/1회	
영 상 장 비	20,000원/1회	
녹음 및 녹화	10,000원/1회	
냉 · 난 방	20,000원/1시간	

(3)다목적홀(목련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50,000원/1회	
음향장비	10,000원/1회	
피 아 노	5,000원/1회	
영상장비	20,000원/1회	
냉 · 난방	20,000원/1시간	

(4)종합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고
대 관 료	120,000원/1회	
음향장비	10,000원/1회	
조명시설	30,000원/1회	
냉 · 난방	30,000원/1시간	

(5)소체육관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고
대 관 료	30,000원/1회	
냉 · 난방	10,000원/1시간	

(6) 기타 시설의 사용료

구분	연습실	식당홀 (그린홀)	전시실 (토정갤러리)	시청각 교육실	컴퓨터교육실	문화교실
대관료 (1회)	5,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15,000원
공통사항	o 영상장비 : 10,000원/1시간 o 피 아 노 : 5,000원/1시간 o 녹화 및 녹음 : 10,000원/1회					

(7) 주 차 료

구 분	주 차 료	비 고
모든 회원(일일회원 포함) 및 공연관람자	· 3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회원권 2개 이상 사용자	· 5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무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무료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 '주차확인'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 1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단, 공단 직원은 제외
기타 차량(민방위교육 훈련참가차량 포함)	· 기본 1시간 2,000원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10분이내 회차 차량은 무료

※비 고

1.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000원으로 한다.
2.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할인(면제) 대상차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면제)한다.
4.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문화강좌 프로그램		10,000 ~ 3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20,000 ~ 50,000
	어린이	15,000 ~ 40,000
전산 및 기타 교육		20,000 ~ 43,000
유아 ·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체 능 단		100,000 ~ 20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 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이용		개인지도
		정기	1회	
사용료	25,000~80,000	25,000~70,000	1,300~3,000	100,000~150,000
기타	· 1회 입장료는 1일 1시간 기준임 · 성인 월강습회원은 해당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일요일은 제외) ·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일일 자유이용은 20% 할증			

(나) 헬 스

(단위 : 원/월)

구 분	일 반	중 · 고생	비 고
사용료	35,000~50,000	35,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 분	정기(월)			일일이용		비 고
	일반	중 · 고생	초등생/유아 (강습료포함)	기본 1 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80,000	75,000	80,000~ 100,000	4,000	2,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 시간에 한함
기 타	·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로 하며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3. 독서실

구 분	성 인	중 고 생	비 고
월 사용료	30,000원	15,000원	
일일사용료	1,000원	500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3. (생략)	**제4조(관리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 2.~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생략)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①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6시에서 22시까지로 하되, 독서실의 경우는 06시에서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독서실</th><th colspan="2">독서실을 제외한 시설</th></tr>
<tr><th>하계
5월1일-
10월31일</th><th>동계
11월1일-
4월30일</th><th>하계
5월1일-
10월31일</th><th>동계
11월1일-
4월30일</th></tr>
<tr><td>개방시간</td><td>07:00~
24:00</td><td>08:00~
24:00</td><td>06:00~
22:00</td><td>08:00~
21:00</td></tr>
</table>
②(생 략)

제10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에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3.(생략)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3. (생 략)
〈신 설〉
</td><td>
〈삭제〉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의 개방) ----------
1.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3.(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교육
2. 국가·공공단체가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td></tr>
</table>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③----------등록된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④이 조례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별표 제2호가목에 규정한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④----------별표 제2호에 정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다.
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사종료 후 익일 17:00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할인) ①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종목 이상의 신청자 및 장기등록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1. 동시에 3종목(강좌)이상 신청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2.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등록자 :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제13조의3(할인)** ①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할인한다. 1. 문화 3강좌 또는 체육 3종목이상 동시등록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2. 1개월 단위 강좌 3개월분 동시등록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종목이상 신청과 3개월이상 장기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한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생략) 〈신 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대관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의해 배분한다.
제15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신 설〉	**제15조(입장제한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각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1.~3.(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 행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2)~(4) (생략)

(5)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포함)작업에 따른 기본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나. 개별기준

(1)대공연장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100,000원	
음향장비	1회 1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1시간	15,000원	
피 아 노	1회 3시간	15,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30,000원	
녹음및녹화	1회 3시간	15,000원	
냉·난방	1회 1시간	30,000원	

<신설>

개 정 안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6) "나"목 개별기준 중 (1)내지 (6)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대공연장(서울퍼포밍아트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관료	공연	100,000원/1회	1. 공연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적용 2. 철야사용(23:00~익일06:00)은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단, 준비 및 철수 작업 시 기본사용료로 적용)
	행사, 영화상영	150,000원/1회	
음향장비		40,000원/1회	- 기본장비 제공 - 추가장비 : 무선마이크 5,000원(1일/개) 핀마이크 10,000원(1일/개)
조명장비		50,000원/1회	- 기본조명 제공 - 핀조명 사용 : 대당 10,000원
영상장비		40,000원/1회	- 영사기
부대장비		20,000원/1회	- 피아노, 포그머신, 빔프로젝트
		50,000원/1일	- 음향반사판, 댄스플로어(Tape별도)
냉난방비		30,000원/1시간	

※ 연속하여 5일 또는 10회 이상 장기 사용시에는 전체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단, 준비나 연습 등을 위한 사용기간은 제외)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 행

(2) 소강당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50,000원	
음향장비	1회 3시간	15,000원	
조명시설	-	무료	
피 아 노	1회 3시간	10,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20,000원	
녹음및녹화	1회 3시간	10,000원	
냉 · 난방	1회 1시간	20,000원	

(3) 다목적홀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대 관 료	1회 3시간	30,000원	
음향장비	1회 3시간	15,000원	
조명시설	-	무료	
피 아 노	1회 3시간	10,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20,000원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사용료	
대 관 료	1회 3시간	100,000원	
음향장비	1회 3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1시간	10,000원	
냉 · 난방	1회 1시간	30,000원	

(5) 소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2시간	30,000원	
음향장비	1회 2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1회 2시간	20,000원	

개 정 안

(2) 소공연장(아소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60,000원/1회	
음향 및 조명	20,000원/1회	
피 아 노	10,000원/1회	
영상장비	20,000원/1회	
녹음 및 녹화	10,000원/1회	
냉 · 난방	20,000원/1시간	

(3) 다목적홀(목련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50,000원/1회	
음향장비	10,000원/1회	
피 아 노	5,000원/1회	
영상장비	20,000원/1회	
냉 · 난방	20,000원/1시간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20,000원/1회	
음향장비	10,000원/1회	
조명시설	30,000원/1회	
냉 · 난방	30,000원/1시간	

(5) 소체육관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30,000원/1회	
냉 · 난방	10,000원/1시간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 행

(6) 기타 시설의 사용료

(단위:원)

구분	연습실1.2 (지하1층)	식당홀 (지하1층)	로 비 (지하1층)	라운지 (지상1층)	시청각교육실 (지상3층)	컴퓨터 교육실 (지상4층)	문화교실 小.中.大 (지상5층)
용도	음악, 연극등 연습	식 당	전시공간	전시공간	시청각교육	컴퓨터 교육	강좌
대관료 (1시간기준)	5,000	10,000	10,000 (전시칸막이 포함)	10,000 (전시칸막이 포함)	20,000	20,000 (컴퓨터 사용가)	15,000
음향장비 사용료 (1시간기준)	-	-	-	-	10,000	10,000	10,000
조명시설 사용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피아노 사용료 (1시간기준)	-	-	-	-	5,000	-	-
영상장비 사용료 (1시간기준)	-	-	-	-	10,000	10,000	10,000
녹음 및 녹 화 (1시간기준)	-	-	-	-	5,000	5,000	-
냉·난방	무료	10,0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7) 주 차 료

구 분	주 차 료	비 고
모든 회원(일일회원 포함) 및 대공연장 관람자	· 3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회원권 2개이상 사용자	· 5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추가 징수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무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무료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10분경과시마다 500원추가 징수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 1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기타 차량	· 기본 1시간 2,000원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신 설>

개 정 안

(6) 기타 시설의 사용료

(단위:원)

구분	연습실	식당홀 (그린홀)	전시실 (토장갈라티)	시청각 교육실	컴퓨터 교육실	문화교실
대관료 (1회)	5,000	10,000	10,000	20,000	20,000	15,000
공통사항	o 영상장비 : 10,000원/1시간 o 피 아 노 : 5,000원/1시간 o 녹화 및 녹음 : 10,000원/1회					

(7) 주 차 료

구 분	주 차 료	비 고
모든 회원(일일회원 포함) 및 공연관람자	· 3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회원권 2개 이상 사용자	· 5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추가 징수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무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무료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 '주차확인'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추가 징수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 1시간 무료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단,공단직원은 제외
기타 차량(민방위교육 훈련참가차량 포함)	· 기본 1시간 2,000원 · 이후 매10분당 500원 추가 징수	10분이내 회차 차량은 무료

※비 고

1.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000원으로 한다.
2.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 등 할인(면제) 대상차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면제)한다.
4.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 행

2.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신설〉

가.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성 인	중 · 고생	초등생	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		10,000~2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기	25,000~40,000	23,000~35,000	20,000~30,000	
	1회 기본료	1,800~2,300	1,200~2,000	1,000~1,500	
전산교육 프로그램		35,000~40,000	35,000	30,000	
유아 · 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30,000	25,000~15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나. 체육시설 사용료

(1) 수 영

(단위 : 원/월)

구분	성 인				중·고생		초등생				유 아	
	강습료		이용료	기본료	강습료	기본료	강습료		개인지도반	기본료	엄마포함	유아단독
	3회/주	5회/주	5회/주	1회	3회/주	1회	3회/주	5회/주	5회/주	1회	3회/주	3회/주
사용료	50,000	70,000	50,000	2,500	30,000	1,700	25,000	40,000	100,000~150,000	1,300	40,000	30,000
기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 성인 월강습회원은 비수기(당해년도 10월~다음년도 6월) 기간중 자유수영 월 2회 무료사용(단, 평일에 한함)											

개 정 안

2.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문화강좌 프로그램		10,000 ~ 3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20,000 ~ 50,000
	어린이	15,000 ~ 40,000
전산 및기타교육		20,000 ~ 43,000
유아 ·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체능단		100,000 ~ 20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 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이용		개인지도
		정기	1회	
사용료	25,000~80,000	25,000~70,000	1,300~3,000	100,000~150,000
기타	· 1회 입장료는 1일 1시간 기준임 · 성인 월강습회원은 해당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단, 일요일은 제외) ·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일일 자유 이용은 20% 할증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종류 및 징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현 행

(2) 헬 스

(단위 : 원/월)

구 분	성 인		중·고생		비 고
	7회/주	1회 (기본료)	7회/주	1회 (기본료)	
사용료	40,000	3,000	35,000	2,500	휴관일을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 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3)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 분	정기(월)			일일이용			비 고
	성인	중·고생	초등생/유아 (강습료포함)	1박스	2박스	3박스	
사용료	80,000	75,000	80,000~ 100,000	4,000	6,000	8,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 타	· 초등생/유아 기본료는 1일 1~2시간 기준임						

비 고 : 제2호의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생략)

개 정 안

(나) 헬 스

(단위 : 원/월)

구 분	일 반	중·고생	비 고
사용료	35,000~ 50,000	35,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 분	정기(월)			일일이용		비 고
	일반	중·고생	초등생/유아 (강습료포함)	기본 1 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80,000	75,000	80,000~ 100,000	4,000	2,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 타	·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로 하며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삭제〉

3. (현행과 같음)